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484 발의연월일: 2022. 7. 15.

발 의 자:최혜영·강준현·김민석

김성주 • 서영석 • 신정훈

이용빈 · 이은주 · 이장섭

임호선 • 전용기 • 홍성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최근 지역별 특성에 맞춘 건강증진 사업,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대응 등 보건소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, 보건행정, 보건사업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해당정보시스템의 전산화 범위가 진료 및 실적 관리 중심으로 제한되어있고, 사업별로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낙후된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음.

이에,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·처리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함으로 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또한, 해당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대행기관에 대한 규정, 시스템

개편에 관한 부처 간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,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.

주요내용

- 가.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(안 제5조제1항).
- 나. 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(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).
- 다.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·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 명확화(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).
- 라. 지자체,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 신설(안 제5 조제7항).
- 마.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항목 확대 및 정보요청 협조 및 거주지 방문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0조제1항·제3항·제4항 및 제21조제2항).

- 바.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 정비(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).
- 사.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규정 신설(안 제28조제4호).
- 아.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(안 제30조제4항).
- 자.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파기요청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(안 제34조제1항).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"(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)"를 "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지역보건의료기관 (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 진료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기능을"을 "지역보건의료 기관(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제11조에 따른 기능 및 업무를"로, "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 업무의 전자화"를 "처리 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자료를 수집 · 관리 · 보유 · 활용(실적보고 및 통계산출을 말한다)할 수 있으며"를 "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 체"로, "단체에"를 "단체, 법인·시설 등에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중 "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"을 "국가기관. 지방자 치단체,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은"으로 한다.

제5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와

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- 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
- 2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
- 3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
- 4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
- 5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
- 6.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
- 7. 「지방재정법」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
- 8. 「치매관리법」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
- 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 ·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 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

한다)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- 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⑦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, 내용 및 방식과 시스템 추가 개발 비용, 기간 및 보안 등 시스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"을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소득·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"를 "인적사항·가족관계·소득·재산·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·건강상태 등에관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·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보훈급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단체, 법인·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, 법인·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담당자,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 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

제21조제2항 중 "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"을 "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한"으로, "소득·재산"을 "소득·재산·건강상태"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전단 중 "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"을 "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"으로

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.

제2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5조에 따라 수집·관리·보유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제30조제4항 중 "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"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하거나 파기 요청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4항제9호, 제20조제1항 · 제3항,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 제5조(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 제5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화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이용 등) ① -----지역 보건의료기관(「농어촌 등 보 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같다)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・관리 업 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 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・운 영할 수 있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을 구축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 ·관리·보유·활용(실적보고 | 처리할 수 있으며, 관계 중앙행 및 통계산출을 말한다)할 수 있으며, 관련 기관 및 단체에

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

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

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

보건의료기관(「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 이 제11조에 따른 기능 및 업무 를 ----처리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 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------- 자료 또는 정보를 정기관, 지방자치단<u>체</u>---------- 단체, 법인 •시설 등에---------. ---- 국가기관, 지방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자치단체,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은 -----

개 정 안

다.

- 1. ~ 3. (생략)
- ③ (생략)

<신 설>

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 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
- 2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
- 3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 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
- 4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제1항 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 스템
- 5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5제1항 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

<신 설>

<신 설>

6.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3조제 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. 「지방재정법」 제96조의2제 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8. 「치매관리법」 제13조의2제 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시스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 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 • 관리를 위하여 특 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(이 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 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・군수・구청장"이 라 한다)에게 제공할 수 있다. 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 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 <신 설>

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 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 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 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지역주 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건 의료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의 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 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.

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제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, 내용 및 방식과 시스템 추가개발 비용, 기간 및 보안 등 시스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.

세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
등) ① 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</u>
<u> 군수·구청장</u>
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 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다.

- 1. ~ 5. (생 략)
- ② ~ ⑧ (생 략)

제20조(신청에 따른 조사) ① 제20조(신청에 따른 조사) ① --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신 청을 받으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 등에 |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. <단 서 신설>

- ② (생략)
-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 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 의3에 따른다.

 _
 _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----- 인적사항·가족관계 ·소득·재산·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• 건강상태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 고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서비 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 항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· 가족관계등 록전산정보 · 금융 · 국세 · 지방 세, 토지・건물・건강보험・국 민연금 · 고용보험 · 산업재해보

<신 설>

제21조(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제21조(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 실시) ① (생 략)

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제20조제2항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

상보험·보훈급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 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단체, 법인 ·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 체, 법인ㆍ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 및 조사기간, 조사범 위, 조사담당자, 관계 법령 등 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 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.

시) ① (현행과 같음)

2	 	-	-	 _	_	-	-	-	-	-	-	-	-	_	-	_	-	-

----- 제20조제2항 에 따라 제출된 자료ㆍ정보의 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한 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 무자의 <u>소득·재산</u> 수준이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 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2조(정보의 파기) ① (생 략) 저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 료정보시스템 또는 「사회복지 사업법」 제6조의2에 따른 정 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 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 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 다.

<신 설>

제28조(개인정보의 누설금지) 지 저

<u>소득·재산·건강상태</u>
③ (현행과 같음)
∥22조(정보의 파기) ① (현행과
같음)
②
「사회보장기
본법」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
<u>정보시스템</u>
③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
청장, 보건의료 관련 기관・단
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
및 제6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
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
파기하여야 한다.
세28조(개인정보의 누설금지)

역보건의료기관(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|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를 포함한다)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・ 운영하였거나 구축 · 운영하고 있는 자(제30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)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~ 3 ③ (생 략)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<u>「사회복지</u> 사업법」 제6조의3에 따른 전

.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5조에 따라 수집・관리・
보유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
<u>는 정보</u>
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4
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

다.

⑤ (생략)

제34조(과태료) <신 설>

- ①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・ 군수 · 구청장이 부과 · 징수한 다.

<u>담기구에</u> 대행하게 할 수 있 <u>운영에 관한 법</u>률」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과태료) ① 제22조를 위반 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 지 아니하거나 파기요청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- ③ 제1항 및 제2항-----